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정 2009. 4. 30.

개정 2012. 1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고 한다)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에 임명을 요청할 대구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장선거’라 함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총장임 후보자’라 함은 본교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본교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총장선거의 시기) 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120일에서 40일 전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②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제4조 (총장 임후보자의 자격) ①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재직 중인 총장 포함)으로서 총장 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지가 투철하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
 2. 건전한 교육관과 도덕성을 갖추고 교내외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3. 선거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4년제 정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외 저명인사로서 본교 4개 단과대학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30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은 총장 임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총장후보 선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전체교수회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는 평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수회 의장이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시행 세칙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선거일 공고) 총장후보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7조 (총장 입후보자의 등록) ① 총장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교 정년트랙 전 임교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인은 4개 단과대학 이상에 분포되어야 하고, 1개 단과대학 추천인 수는 추천인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추천인 명부는 추천인 연명으로 작성하되 추천인이 자필로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추천인은 총장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 동일인이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을 모두 무효로 한다.

④ 추천인은 추천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후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총장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인 명부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교무위원(총장 제외), 대학평의원, 교수회 임원이 총장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제5항의 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8조 (총장 입후보자 등록의 무효) 총장 입후보자 등록 후 제4조 또는 제7조에 대한 결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9조 (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총장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및 질의) 총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선거권자는 소견 발표 후 총장 입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11조(선거 방법 및 당선자의 결정) ① 총장후보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권자의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② 총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다수 득표자로 인정한다.

④ 총장 임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경우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2조(당선자 공고와 임명 요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고 교수회 의장 및 당선자에게 통보한다.

② 교수회 의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에 당선자의 총장 임명을 요청한다.

제13조(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3개 이상 단과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50인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개정안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실제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위임장은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8조 제2항의 전체회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후 교수회 의장이 공포한 날(2009년 4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교수회 총회에서 의결한 후 교수회 의장이 공포한 날(2012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